

교육부

① 학생대상 약물 오·남용 교육 실시

- (개요) 매년 초 학생건강증진정책방향을 통해 보건교육 상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·남용 예방교육 실시 및 이를 위해 교원 연수 과정 중 약물오남용 예방교육내용 포함 안내
- (관련규정) 「학교보건법」 제9조(시행 '20.6.~)

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, 질병의 치료와 예방, 음주·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(誤用)·남용(濫用)의 예방, 성교육,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마약예방 교육자료 개발·보급

- (개요) 마약예방 교육자료 공유
- (주요내용)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마약예방 교육자료 개발·보급

식약처·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

① 마약류 위험성 국민인식 제고로 국민 안전 강화

○ (개요)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활동 확대로 마약류 폐해 국민인식 제고 및 국민안전 강화

○ (관련규정)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의2(시행 ' 02.12.~)

* (마약퇴치운동본부)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·계몽 및 교육사업 수행

○ (주요 내용)

- 마약류 폐해 국민인식도 조사를 통해 국민인식 개선에 활용

* 매년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인식도를 조사하여 조사 결과를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목적에 활용

- 마약류 폐해 예방 종합정보 제공(마약류 폐해 알리미)으로 국민들을 마약류 폐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

• 마약류 정보, 국내외 법률, 통계, 사건, 이슈, 동향 등 정보 제공

• 구성 : 마약류(452건), 임시마약류(106건), 기타정보(562건)

• 마약류폐해 알리미 사이트 주소 : <http://antidrug.drugfree.or.kr>

- 대국민 마약퇴치 캠페인 개최, 식약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튜브, 온라인 등 불법 마약류, 불법광고 정보차단 활동 실시(연중)

② 취약계층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로 사회안전망 구축

○ (개요) 교육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청소년, 탈북민, 국내거주 외국인 등에게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로 사회 안전망 구축

○ (관련규정)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의2(시행 ' 02.12.~)

* (마약퇴치운동본부)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·계몽 및 교육사업 수행

○ (주요 내용)

- 예방교육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청소년, 탈북민, 마약류 관련분야 대학생(약학대학생,중독관련학과생등)에 대한 맞춤형 교육
-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온라인 강의 강화
 - * 매년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온라인 강의 영상 촬영, 학교등에 제공
- 재범방지를 위한 재활교육 전문강사 양성
 - * 마약류사범 재범방지 법정 의무교육(20.12월 시행) 및 검찰청, 보호관찰소 의뢰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전문강사 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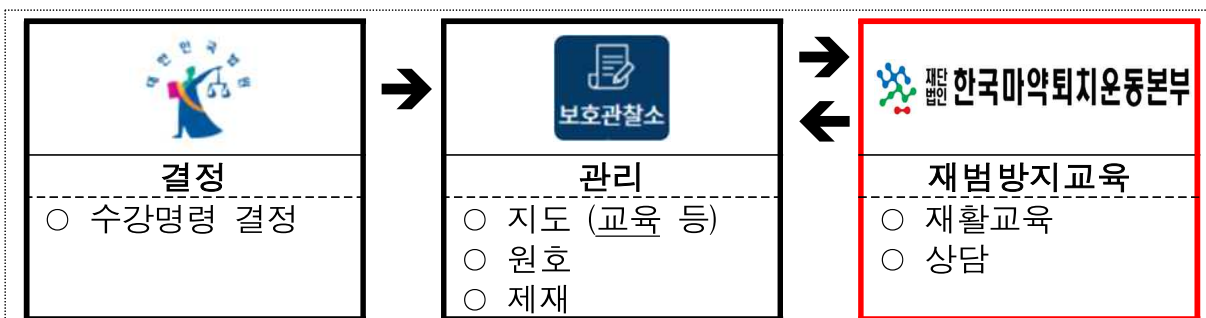
③ 마약류사범 재범예방 의무교육 프로그램

○ (개요) 가장 높은 재범율을 줄이기 위해 유죄판결을 받은 마약류 사범에게 의무적으로 재범예방 교육 및 상담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제도

○ (관련규정)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의2(시행 ' 20.12.~)

* 실형, 보호관찰, 집행유예, 벌금형 등 유죄판결을 받은 마약류사범(단순투약)에게 200시간 이내의 재범예방 교육 의무 병과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 가능

○ (유죄판결 받은 마약류사용 사범 관리 체계)



* (지도)출석지도, 교육프로그램, 소변검사 등, (제재)출석요구, 경고, 구인, 유치, 처분변경 신청 등